

2025 년 등부 제 1707 호

인 증 서

공증인가 홍익법무법인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2025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25. 02. 28.(금) 오전 11시
- 장 소 : 법인 회의실
- 이사총수 : 11명
- 참석이사 : 박진탁 이사장, 유재수 이사, 강영선 이사, 김일두 이사, 채수일 이사  
김상기 이사, 김익신 이사, 송용현 이사, 김승민 이사, 김동엽 이사(이상 10명)

1. 성원보고

김동엽 상임이사가 재적이사 11명중 10명이 참석하였기에 성원이 되었다고 하다.

2. 개회선언

의장 박진탁 이사장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알리고 2025년도 정기이사회를 개회를 선언하다.

3. 전 회의록 보고

김동엽 상임이사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원안대로 전 회의록을 받기로 김승민 이사의 동의, 김상기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이 찬성하다.

4. 보고사항

(1) 2024년도 사업 보고

김동엽 상임이사가 2024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니, 김승민 이사가 받기로 동의, 유재수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2024년도 사업실적 보고를 받기로 하다.

5. 결의할 의 안

(1) 2024년도 감사 보고 및 결산 심의의 건

불참한 오준수 업무감사와 배자하 회계감사를 대신하여 김동엽 상임이사가 업무 감사보고서와 회계 감사보고서를 낭독하다. 강영선 이사가 받기로 동의하고, 김익신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이 찬성하여 2024년도 감사 보고 및 결산 심의를 원안대로 의결하다.

(2)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김동엽 상임이사가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하고, 라파의집 운영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1년간 현행대로 운영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재론하는 것으로 제안하자 이에 송용현 이사가 받기로 동의하고, 김상기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이 찬성하여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받기로 의결하다.

(3) 법인 제규정 개정 심의의 건

(제3호의 1)법인 직제규정 개정의 건

(제3호의 4)법인 문서관리규정 개정의 건

(제3호의 5)법인 지부운영규정 개정의 건

김동엽 상임이사가 법인 사무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3호의 1)직제규정과 관련된 제규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다. 같은 취지의 다음 안건인 (제3호의 4)법인 문서관리규정 개정의 건, (제3호의 5)법인 지부 운영규정 개정의 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니 강영선 이사가 통합하여 심의할 것을 제안하여, 송용현 이사가 받기로 동의하고, 김승민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이 찬성하여 의안 제3호의 1, 제3호의 4, 제3호의 5를 원안대로 받기로 의결하다.

(제3호의 2)법인 인사규정 개정의 건

(제3호의 3)법인 보수규정 개정의 건

최근 시행된 「육아 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개정 내용을 법인 인사규정에 반영할 필요성을 설명하다. 개정된 내용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남임 치료휴가 확대,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유아휴직기간 증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적용 등 반영된 내용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법인 보수규정의 개정 필요성도 설명하니 송용현 이사가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하고, 김상기 이사의 재청으로 전원이 찬성하여 법인 제규정 개정을 받기로 의결하다.

더 이상 논의할 안건이 없으면 폐회를 하자고 유재수 이사가 동의하고, 강영선 이사가 재청하여 이사장이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12시 06분이다.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 한 이사들이 기명날인하다.



2025년 2월 28일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법인인)  
 

대표권있는	이사	박진탁		이사	유재수		이사	강영선	
	이사	김일두		이사	채수일		이사	김상기	
	이사	김익신		이사	송용현		이사	김승민	
	이사	김동엽							

# 홍익 **홍익법무법인**

등부 2025년 제 1707 호

## 인 증

위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의

2025년 2월 28일자 정기 이사회 의사록 에 대하여

대표권있는 이사 박진탁, 이사 유재수, 동 강영선, 동 김일두, 동 채수일, 동 김상기, 동 김익신, 동 송용현, 동 김승민, 동 김동엽 등의 대리인 민역기는 -----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위 의사록의 기명 날인이 각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위 의사록에 기재된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2025년 4월 2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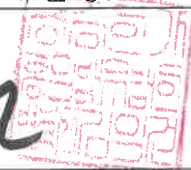
공증사무소 명칭 공증인가 **홍익법무법인**

소 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재지표시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3, 402호 (서소문동, 배재빌딩)

공 증 인 공증담당변호사

김익근



## 아 래

1. 진술서
2. 확인서
3. 법인등기부 등본
4. 정관사본
5. 운전면허증
6. 위임장
7. 인감증명서

